

수신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발신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02-338-2890 f.counsel@sisters.or.kr)
제목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보도요청
날짜	2021. 3. 19. (총 20쪽)

## 보도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에 깊은 신뢰와 경의를 보냅니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본 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총 86,549회의 상담을 해왔으며, 매년 한 해 동안의 상담통계를 분석함으로써 달라지는 성폭력 관련 상담의 경향을 짚어봅니다.
4. 2020년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전체상담은 1,324회(779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 총 1,258회(715건)에 대한 기본 상담통계와 카메라이용촬영 및 준강간·준강제추행 상담의 세부 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5. 다음과 같이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을 보내드리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첨부]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19쪽)

##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 I. 2020년 기본 상담 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	3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3.6%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1% -----	4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3.1%가 남성, 이중 성인은 77.2% -----	4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67.8%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30.6%가 대리인 상담의뢰 -	5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강간 피해 상담 건수 거의 비슷 -----	5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1.5% -----	6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9.1% -----	7
8. 피해자 지원내용 -----	8

### II. 2020년 상담통계 세부분석

1.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	9
1-1. 데이트상대에 의한 카메라이용촬영 피해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1-2.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건수 중 여성 피해자가 94%, 성인여성이 78% 차지	
1-3. 전체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중 66%가 불안 피해 호소	
1-4. 피해촬영물은 주로 채팅앱과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	
1-5. 전체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중 68%가 법적지원 요청	
2. 준강간·준강제추행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	12
2-1. 술과 약물, 수면의 상태를 동반한 성폭력 중 51.1%는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분류되지 못함	
2-2. 술·약물·수면 동반 강간은 18%, 술·약물·수면 동반 강제추행은 33.1%였으나 준강간은 38.4% 준강제추행은 10.5%로 상반된 분포	
2-3.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는 성인기 여성에게 집중	
2-4. 가해자와의 관계는 직장관계에서 가장 높아 준강간은 29.4% 준강제추행은 50%에 달해	
2-5. 모르는 사람에 의한 준강간 피해는 17.6% 전체 통계 5.6%보다 크게 높아	
2-6. 상담 전 법적 대응은 준강간일 경우 32.2% 준강제추행은 17.7%로 큰 차이	
2-7. 피해자 요청사항은 형사지원이 가장 높아	
2-8.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담 중 검찰에서의 기소율은 44.4%, 송치된 사건 중 절반에 못미쳐	
2-9. 법적인 진행을 망설이는 이유는 처벌의 불확실성이 12건 30.8%에 해당	

III. 결론 -----	19
---------------	----

## 1. 2020년 기본 상담 통계

### 1. 연도별 상담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총 86,549회의 상담을 해왔다. 2020년 전체 상담은 1,324회(779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258회(715건)으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1.8%이다. 상담 지원의 내실화로 지속지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 상담 건수가 2019년에 이어 2020년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2017	2,118	1,414	1,260	89.1
2018	1,940	1,359	1,189	87.5
2019	1,419	1,028	912	88.7
2020	1,324	779	715	91.8
총	86,549	57,614	48,555	84.3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3.6%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1%

〈표 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건수 715건 중 669건(93.6%)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506건(70.8%)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6.1%(43건)로 2018년 6.1%, 2019년 6.8%에 이어 6%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3 (0.4)	<b>506</b> <b>(70.8)</b>	74 (10.3)	49 (6.9)	23 (3.2)	14 (2.0)	<b>669</b> <b>(93.6)</b>
남	-	30 (4.2)	8 (1.1)	2 (0.3)	-	3 (0.4)	<b>43</b> <b>(6.1)</b>
기타	-	1 (0.1)	-	-	-	-	1 (0.1)
미상	-	-	-	-	-	2 (0.3)	2 (0.3)
총계	3 (0.5)	537 (75.1)	82 (11.4)	51 (7.1)	23 (3.2)	19 (2.7)	715 (100.0)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3.1%가 남성, 이중 성인은 77.2%

〈표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715건 중 666건(93.1%)을 차지하였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552건(7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	28 (3.9)	-	2 (0.3)	-	1 (0.1)	31 (4.3)
남	15 (2.1)	<b>552</b> <b>(77.2)</b>	49 (6.9)	15 (2.1)	2 (0.3)	33 (4.6)	<b>666</b> <b>(93.1)</b>
기타	-	-	-	-	-	1 (0.1)	1 (0.1)
미상	-	3 (0.4)	-	-	-	14 (2.0)	17 (2.4)
총계	15 (2.1)	583 (81.5)	49 (6.8)	17 (2.4)	2 (0.3)	49 (6.8)	715 (100.0)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67.8%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30.6%가 대리인 상담의뢰

<표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15건 중 485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219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10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직장과 연관된 관계에 있는 사람, 이웃·친구가 뒤를 이었다.

2015년 이전만 해도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율이 매해 50% 초중반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조금씩 커져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2019년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며 67.8%를 차지했다.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표 4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 건(%)>

본인	대리인 219(30.6)										본인/ 대리인 (동석)	미상	전체상담 건수
	가족 · 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 · 친구	직장	학교 · 학원	사회 복지 기관	기관 · 단체	공공 및 유관기관	시민사회 단체	기타			
485 (67.8)	105 (14.7)	16 (2.2)	27 (3.8)	30 (4.2)	15 (2.1)	-	-	8 (1.1)	5 (0.7)	13 (1.8)	11 (1.5)	-	715 (100.0)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강간 피해 상담 건수 거의 비스

<표 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247건(34.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근소한 차이로 강간 피해 상담 246건(34.4%) 역시 높게 나타났다. 강간 피해의 경우, 2018년 28.5%, 2019년 31.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33건(13.8%)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19세~14세)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가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다.

표 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피해자 연령						총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2 (0.3)	2 (0.3)	-	-	-	4 (0.6)	246 (34.4)
	강간 (유사강간포함)	1 (0.1)	113 (15.8)	30 (4.2)	17 (2.4)	8 (1.1)	2 (0.3)	171 (23.9)	
	준강간	-	49 (6.9)	2 (0.3)	-	-	-	51 (7.1)	
	강간미수	1 (0.1)	14 (2.0)	1 (0.1)	1 (0.1)	3 (0.4)	-	20 (2.8)	
강제	강제추행	1	172	22	22	11	5	233	247

추행	준강제 추행	(0.1)	(24.1)	(3.1)	(3.1)	(1.5)	(0.7)	(32.6)	(34.5)
		-	13 (1.8)	1 (0.1)	-	-	-	14 (2.0)	
성희롱		-	91 (12.7)	6 (0.8)	2 (0.3)	-	-	99 (13.8)	
통신매체이용음란		-	11 (1.5)	3 (0.4)	-	-	-	14 (2.0)	
카메라이용촬영		-	40 (5.6)	9 (1.3)	-	-	1 (0.1)	50 (7.0)	
스토킹		-	16 (2.2)	-	-	-	1 (0.1)	17 (2.4)	
성적목적에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1 (0.1)	-	-	-	-	1 (0.1)	
미상		-	15 (2.1)	4 (0.6)	9 (1.3)	3 (0.4)	10 (1.4)	41 (5.7)	
총계		3 (0.4)	537 (75.1)	80 (11.2)	51 (7.1)	25 (3.5)	19 (2.7)	715 (100.0)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1.5%

<표 6 가해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583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가 해 자 연 령						총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3 (0.4)	1 (0.1)	-	-	-	4 (0.6)
	강간 (유사강간포함)	1 (0.1)	137 (19.2)	20 (2.8)	2 (0.3)	-	11 (1.5)	171 (23.9)
	준강간	-	49 (6.9)	2 (0.3)	-	-	-	51 (7.1)
	강간미수	-	16 (2.2)	2 (0.3)	-	-	2 (0.3)	20 (2.8)
강제 추행	강제추행	6 (0.8)	195 (27.3)	12 (1.7)	11 (1.5)	2 (0.3)	7 (1.0)	233 (32.6)
	준강제 추행	1 (0.1)	12 (1.7)	1 (0.1)	-	-	-	14 (2.0)
성희롱		6 (0.8)	86 (12.0)	4 (0.6)	1 (0.1)	-	2 (0.3)	99 (13.8)
통신매체이용음란		-	11 (1.5)	1 (0.1)	1 (0.1)	-	1 (0.1)	14 (2.0)
카메라이용촬영		-	41 (5.7)	3 (0.4)	-	-	6 (0.8)	50 (7.0)
스토킹		-	16 (2.2)	-	-	-	1 (0.1)	17 (2.4)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1 (0.1)	-	-	-	-	1 (0.3)
미상	1 (0.1)	16 (2.2)	3 (0.4)	2 (0.3)	-	19 (2.7)	41 (5.7)
총계	15 (2.1)	<b>583</b> <b>(81.5)</b>	49 (6.9)	17 (2.4)	2 (0.3)	49 (6.9)	715 (100)

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9.1%

<표 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37(89.1%)으로 85%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09건(38.9%)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작년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77건(14.3%)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지난 해까지 학교내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친족에 의한 피해와 인터넷으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각각 13건(23.5%)씩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17건(33.3%), 11건(4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유형 연령	아는 사람 <b>637(89.1)</b>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족외 인척 102(14.3)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 스 제공 자	학교	유치 원/학 원	주변인 의 지인	동호회	기타			
	친족	친족외 인척													
2016년	118 (8.7)	19 (1.4)	368 (27.2)	141 (10.4)	43 (3.2)	63 (4.7)	78 (5.8)	160 (11.8)	35 (2.6)	102 (7.5)	11 (0.8)	40 (3.0)	101 (7.5)	74 (5.5)	1,353 (100)
2017년	121 (9.6)	22 (1.7)	375 (29.8)	116 (9.2)	40 (3.2)	60 (4.8)	66 (5.2)	121 (9.6)	40 (3.2)	73 (5.8)	19 (1.5)	45 (3.6)	103 (8.2)	59 (4.7)	1,260 (100)
2018년	64 (5.4)	66 (5.6)	353 (29.7)	86 (7.2)	41 (3.4)	65 (5.5)	60 (5.0)	136 (11.4)	39 (3.3)	66 (5.6)	13 (1.1)	40 (3.4)	73 (6.1)	87 (97.3)	1189 (100)
2019년	78 (8.6)	9 (1.0)	276 (30.3)	94 (10.3)	24 (2.6)	92 (10.1)	41 (4.5)	87 (9.5)	33 (3.6)	28 (3.1)	31 (3.4)	6 (0.7)	43 (4.7)	70 (7.7)	912 (100)
2020년	59 (8.3)	43 (6.0)	215 (30.1)	86 (12.0)	32 (4.5)	44 (6.2)	33 (4.6)	50 (7.0)	20 (2.8)	33 (4.6)	15 (2.1)	7 (1.1)	40 (5.6)	38 (5.3)	715 (100)
고령 (65세 이상)	-	-	-	1 (33.3)	-	1 (33.3)	-	-	-	-	-	-	1 (33.3)	-	3 (100)
성인 (20세 이상)	14 (2.6)	9 (1.7)	<b>209</b> <b>(38.9)</b>	<b>77</b> <b>(14.3)</b>	19 (3.5)	31 (5.8)	30 (5.6)	34 (6.3)	13 (2.4)	27 (5.0)	12 (2.2)	7 (1.3)	33 (6.1)	22 (4.1)	537 (100)
청소년 (19세-14세)	<b>13</b> <b>(15.9)</b>	6 (7.3)	4 (4.9)	7 (8.5)	<b>13</b> <b>(15.9)</b>	8 (9.8)	2 (2.4)	11 (13.4)	3 (3.7)	5 (6.1)	3 (3.7)	0	3 (3.7)	4 (4.9)	82 (100)
어린이 (13세-8세)	<b>17</b> <b>(33.3)</b>	<b>18</b> <b>(35.3)</b>	-	-	-	3 (5.9)	1 (2.0)	4 (7.8)	2 (3.9)	1 (2.0)	-	-	3 (5.9)	2 (3.9)	51 (100)
유아 (7세 이하)	<b>11</b> <b>(47.8)</b>	9 (39.1)	-	-	-	-	-	-	-	2 (8.7)	-	-	-	1 (4.3)	23 (100)
미상	4 (21.1)	1 (5.3)	2 (10.5)	1 (5.3)	-	1 (5.3)	-	1 (5.3)	-	-	-	-	-	9 (47.4)	19 (100)

### 8. 피해자 지원내용

<표 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20년 상담을 의뢰받은 피해자를 상담소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중복표기 하였으며 심리·정서 지원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법적 지원이 395건으로 많았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 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진다. 심리 및 정서지원 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 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타 단체로 연계하여 좀 더 긴밀한 자 원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거나 직접 연계한 경우이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 경우를 나타낸 다.

표 8 피해자 지원내용(중복)

<단위: 건(%)>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쉼터연계	기관연계	기타	전체지원수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관련 상담					
<b>395</b> <b>(55.2)</b>	8 (1.1)	31 (4.3)	<b>465</b> <b>(65.0)</b>	-	102 (14.3)	5 (0.7)	715 (140.7)
	39 (5.5)						



## II. 2020년 상담통계 세부분석

2020년 초 시민, 활동가, 언론 그리고 피해자들의 꾸준한 목소리로 텔레그램 성착취가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N번방 사건 공론화는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가해자 처벌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나타난 디지털 성폭력 중 카메라 이용촬영 유형을 세부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형법상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형사 절차에서 그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인정받지 못해왔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피해유형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더하여 술·약물·수면을 동반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술이나 약물, 수면 중 일어난 피해에 대해 세부분석하였다

### 1. 카메라이용촬영 유형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성폭력 상담 중 카메라이용촬영 유형 상담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4%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처음으로 7%를 차지하며 크게 증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디지털 성범죄에 주목했던 2020년 한 해의 카메라이용촬영 유형 상담을 상담 통계를 통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20년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건수는 전체 성폭력 상담 715건 중 총 50건이다. 카메라이용촬영 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포함한다.

#### 1-1. 데이트상대에 의한 카메라이용촬영 피해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표 9〉에 따르면,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중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22건(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표 7〉의 전체 성폭력 상담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2%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친밀한 관계에는 데이트상대 및 배우자가 포함된다. 그만큼 카메라이용촬영 피해는 사적 관계의 친밀함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11건(22%)으로 뒤를 이었다. 이 항목은 채팅 앱, SNS에서 만난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카메라이용촬영 피해가 온라인 및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82%로 전체 성폭력 상담에서 아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89.1%인 것과 비교해 다소 낮지만, 카메라이용촬영 피해 또한 사회적 통념과 달리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9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건(%)>

아는 사람 41(82)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학원	주변 인의 지인	동호 회	기타			
1 (2)	3 (6)	<b>22</b> <b>(44)</b>	11 (22)	2 (4)	-	1 (2)	-	-	1 (2)	5 (10)	4 (8)	50 (100)

1-2.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건수 중 여성 피해자가 94%, 성인여성이 78% 차지

<표 10>을 보면,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전체건수 50건 중 47건(94%)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2>의 전체 상담 중 여성 피해자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령 요소를 함께 보면, 성인여성의 비중이 39건(78%)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청소년 피해자는 9건(18%)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에서의 청소년 피해자 비중(11.4%)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표 10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	<b>39</b> <b>(78)</b>	7 (14)	-	-	1 (2)	<b>47</b> <b>(94)</b>
남	-	1 (2)	2 (4)	-	-	-	3 (6)
총계	-	40 (80)	<b>9</b> <b>(18)</b>	-	-	1 (2)	50 (100)

1-3. 전체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중 66%가 불안 피해 호소

본 상담소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피해를 상담일지에 표시한다. 심리적 피해 항목에는 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 대인관계 회피 등이 있는데 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는 특히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표 11>을 보면,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중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는 비중이 32%인 것에 비해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건수는 불안을 호소하는 비중이 66%로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불안 피해 호소

<단위: 건(%)>

	전체	불안피해
성폭력 상담	715 (100)	229 (32)
카메라이용촬영	50 (100)	33 (66)

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는 주로 자신도 모르게 촬영물이 유포될 것을 불안해하였고 불안의 정도는 유포 인지 여부와 관계없었다. 유포가 확인되면 재유포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유포가 확인되지 않아도 촬영물을 가진 상대가 최초 유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 호소는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났다. 한편, 전체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50건 중에 가해자가 유포 협박을 한 사례는 18건으로 3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적지 않은 가해자들이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약점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불안의 종류나 정도가 개별 피해자와 상황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불안 호소의 비중을 피해 유형별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이익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것을 불안해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한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함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이를 단순한 수치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 1-4. 피해촬영물은 주로 채팅앱과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

전체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50건 중에 촬영물 유포가 확인된 건은 19건으로 3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피해자가 촬영물 유포를 직접 인지하고 호소하는 경우를 산정한 수치이며 유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포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또 다른 가해자에 의해 재유포 피해를 겪은 사례들도 있으며 모든 유포 경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유포 피해의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 12>는 촬영물 유포를 인지한 사례들의 유포 경로를 분석한 표다. 촬영물은 주로 채팅 앱과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채팅 앱을 통해 유포된 사례가 12건(6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인사이트가 7건(36.8%)이었다. 기타 사례에는 지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송출한 사례 등이 있다.

표 12 유포 경로(중복)

<단위: 건(%)>

채팅 앱	성인사이트	기타	전체 건수
12 (63.2)	7 (36.8)	4 (21.0)	19 (121.0)

#### 1-5. 전체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중 68%가 법적지원 요청

<표 13>은 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는 표다. 법적 지원은 34건(68%)으로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었다. 이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고소를 고려하거나 선택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촬영 및

유포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며 많은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한다. 본 상담소는 법률상담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으로 법적 지원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심리·정서 지원이 22건(44%)으로 많았다. 피해자의 요청 사항 중 법적지원과 심리·정서 지원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전체 성폭력 상담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아래 표 중 기타 항목의 대부분은 촬영물 삭제 요청이었다. 본 상담소에서는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 지원이 가능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 및 연계하였다.

표 13 피해자 요청(중복)

<단위: 건(%)>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소속 조직내 대응	개인적 대응	피해보상 합의	성폭력 외 사건 해결	기타	전체 건수
34 (68)	3 (6)	22 (44)	2 (4)	4 (8)	2 (4)	2 (4)	7 (14)	50 (152)

## 2. 준강간, 준강제추행 세부분석 및 통계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상담 중 형법상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하고 있다.

2015년 일부 바, 클럽, 인터넷에서 도수를 속인 술이나 약물을 판매하여 성폭력에 가담, 이용하고 있음이 문제제기되고, 2018년 ‘버닝썬 사건’ 등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그건 강간입니다.’캠페인(2016)을 통해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통념으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도,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렸다.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피해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한다면 준강간인 항거불능과 심신상실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의 성폭력은 부정당하기 일쑤이고 비난과 책임도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전가된다. 현행법에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걸어가거나 가해자의 말에 대답을 하거나 하면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현상”인 블랙아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블랙아웃은 현행법에서 항거불능, 심신 상실로 인정되지 않아 준강간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많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주장도, 처벌도 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만들어낸 논리 ‘동의를 성관계 또는 가해자의 ‘고의성 없음’으로 둔갑하는 것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껴왔다. 그러나 지속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지난 2021년 2월 4일 대법원 제3부는 블랙아웃을 유죄로 판단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20년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세부분석을 해보았다.

**2-1. 술과 약물, 수면의 상태를 동반한 성폭력 중 51.1%는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분류되지 못함**

〈술과 약물, 수면의 상태를 동반한 성폭력을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의 근거는 상담시 상담자가 내담자의 피해 내용을 듣고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하였지만 항거불능, 심실상실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하였지만 항거곤란이나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분류하고 심실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라면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서 피해 상황을 인식하였으나 거부 의사를 강하게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분류하고 술이나 약물, 수면으로 피해 당시 피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분류하였다.〉

〈표 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에 의하면 준강간은 51건 7.1%, 준강제추행은 14건 2%으로 그리 높은 비중은 아니다. 하지만 〈표14〉에서 술과 약물, 수면이 동반된 성폭력이 133건으로 전체상담통계의 715건 중 1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성폭력 133건 중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분류는 되지 않았지만, 술과 약물, 수면의 상태를 동반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68건으로 51.1%이고,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133건 중 65건으로 48.9%이다.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상태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가해를 저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술과 약물, 수면의 상태가 동반되었지만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처럼 항거불능, 심실상실의 상태를 증빙하기 어렵다면,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증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게 된다. 술과 약물 수면이 동반된 성폭력 중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으로 분류되지 못한(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분류) 상담이 51.1%나 된다는 것은,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상태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자 51.1%는 강간으로도, 준강간으로도 처벌이 어렵게 되는 법적인 공백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전체 상담통계에서 강간 246건 34.4%와 강제추행 247건 34.5%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술과 약물, 수면이 동반된 상황에서의 강간이나 준강간이 56.4%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43.6%보다 높게 나타나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상황에서는 강제추행보다 강간에 이르는 피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강간, 강제추행과 준강간, 강제추행의 비교

<단위:건(%)>

분류	건(%)	분류	건(%)	합계
술·약물·수면 동반 강간	24 (18.0)	술·약물·수면 동반 강제추행	44 (33.1)	68 (51.1)
준강간	51 (38.4)	준강제추행	14 (10.5)	65 (48.9)
소계	75 (56.4)	소계	58 (43.6)	133 (100)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강간은 피해 당시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하였지만 심실상실,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분류하였고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상태에서 항거불능 심실상실로 판단된 경우를 말한다.〉

2-2. 술·약물·수면 동반 강간은 24건 18%, 술·약물·수면 동반 강제추행은 44건 33.1%였으나 준강간은 51건 38.4% 준강제추행은 14건 10.5%로 상반된 분포

술, 약물, 수면을 동반한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비교해 보면 서로 대조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준강간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강간은 24건 18%인데 비해 강제추행은 44건 33.1%로 강제추행이 두 배 가까이 높은 반면 준강간은 51건 38.4%이고 준강제추행은 그에 1/3도 못 미치는 14건 10.5%로 나타난다. 강간과 강제추행에서는 강제추행이 크게 높았고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서는 준강간이 3배나 높게 나왔다.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심실상실의 상태일 경우는 준강간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항거불능, 심실상실이 아닐 때는 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상황 즉 심실상실, 항거불능의 여부에 따라 가해의 정도를 가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 중에서는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 자신의 피해를 축소해서 준강간보다 준강제추행으로 믿고 싶어하는 상담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실제로는 준강간의 수치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3.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는 성인기 여성에게 집중

<표 15>에 따르면 준강간은 성인여성이 48건 94.1%에 달하고 준강제추행은 성인여성이 11건 78.6% 나타나 성인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피해는 강간 1건과 강제추행 2건으로 합계 3건 4.6%이다. 이는 전체상담의 남성피해 43건 6%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는 100% 남성으로 나타났다.

표 15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건(%)>

유형 \ 성별연령	성인		청소년		합계
	여	남	여	남	
준강간	48 (94.1)	1 (2.0)	2 (4.0)	-	51 (100)
준강제추행	11 (78.6)	2 (14.3)	1 (7.1)	-	14 (100)
합계	59 (90.8)	3 (4.6)	3 (4.6)	-	65 (100)

2-4. 가해자와의 관계는 직장관계에서 가장 높아 준강간은 29.4% 준강제추행은 50%에 달해

<표 16>에 따르면 준강간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가 직장 관계에서 발생한 건이 15건 29.4%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9건 17.6%, 주변인의 지인이 7건 13.7%로 나왔다. 준강제 추행의 경우는 직장 관계가 14건 중 7건으로 50%였다. 그 뒤로는 동네 사람과 학교 관계가 각각 14.3%였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 직장 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건(%)>

관계 유형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학원	주변의 지인	동호회	기타			
준강간	-	15	2	2	6	-	5	7	3	2	9	-	51
	-	29.4	3.9	3.9	11.8	-	9.8	13.7	5.9	3.9	17.6	-	100
준강제 추행	-	7	-	1	2	-	2	1	1	-	-	-	14
	-	50	-	7.1	14.3	-	14.3	7.1	7.1	-	-	-	100

2-5. 모르는 사람에 의한 준강간 피해는 17.6% 전체 통계 5.6%보다 크게 높아

전체 성폭력 통계 중 <표 7>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5.6%(40건)인데, <표 16>에 의하면 준강간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7.6%로 전체 통계의 모르는 사람보다 세 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는지 <표 17>을 살펴보면 술자리에서 합석한 사람이 44.4%이며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음주 후 귀가하면서 피해를 본 경우가 각각 22.2% 미상이 11.1%로 나왔다. 이것은 준강간 가해의 특성 즉 만취하거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더 빈번하게 성폭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7 가해자와의 관계-모르는 사람 세부 관계

<단위:건(%)>

술자리합석	클럽합석	음주후귀가	미상	합계
4(44.5)	2(22.2)	2(22.2)	1(11.1)	9(100)

2-6. 상담 전 법적 대응은 준강간일 경우 32.2% 준강제추행은 17.7%로 큰 차이

〈표 18〉에서 준강간 사건의 경우 상담 전 법적 대응을 한 경우는 32.3%,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23.5% 다음으로 사과 요구가 11.8%이다. 준강제추행은 주변인 도움 요청과 사과 요구가 각 29.4% 조직공동체 대응이 23.5%이고 법적 대응이 가장 낮은 17.7%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준강제추행일 경우는 주변인의 도움이나 사과 요구, 공동체 내 해결이나 개인적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8 상담 전 대응방법 (중복)

<단위:건(%)>

대응방법 유형	의료	법적대응	주변인 도움요청	사과요구	다른기관	조직공동체	합계
준강간	11 (16.2)	22 (32.3)	16 (23.5)	11 (16.2)	8 (11.8)	-	68 (100)
준강제추행	-	3 (17.7)	5 (29.4)	5 (29.4)	-	4 (23.5)	17 (100)
합계	11 (13.0)	25 (29.4)	21 (24.7)	16 (18.8)	8 (9.4)	4 (4.7)	85 (100)

2-7. 피해자 요청사항은 형사지원이 가장 높아

〈표 19〉에 의하면 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항은 준강간의 경우 형사지원이 35.9%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심리·정서지원이 30.8%였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형사지원이 57.2%나 되고 심리·정서지원이 28.6%이었다. 위의 〈표 18〉에서 상담 전 법적대응이 준강간 32.3% 준강제추행이 17.7%로 큰 차이로 나타났으나 상담 시 요청에서는 준강간이 35.9%인데 준강제추행은 57.2%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준강간의 경우는 상담 전과 상담 이후의 법적대응의 비율이 비슷한데 강제추행의 경우는 상담 전 대응사항과 비교해 보면 상담 시 형사지원 요청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준강제추행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 65건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담 중 형사고소를 한 26건을 제외하고도 형사고소를 고려하면서 상담한 건이 19건이나 되었다. 이를 볼 때 대부분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 즉 형사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피해자 요청사항 (중복)

<단위:건(%)>

요청사항 유형	형사	민사	의료	심리 정서	조직 내 징계	개인 적 대응	합의	사건 해결	기타	합계
준강간	28 (35.9)	2 (2.6)	9 (11.5)	24 (30.8)	3 (3.8)	-	3 (3.8)	2 (2.6)	7 (9.0)	78 (100)
준강제추행	8 (57.2)	-	-	4 (28.6)	-	1 (7.1)	-	-	1 (7.1)	14 (100)

2-8.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담 중 검찰에서의 기소율은 44.4%, 송치된 사건 중 절반에 못미쳐

<표 2> 피해자들의 법적인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 22건의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중에 4건이 법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중에서 신고만 한 상태인 경우 3건으로 11.53%이고 경찰 진행이 8건으로 30.8%, 검찰 진행이 9건 34.1%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건이 6건 23.1%이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형사적 진행은 65건중 26건 으로 40%가 형사적 진행을 하고 있다. 준강간의 경우 검찰에서 진행 중인 9건 중에 4건 44.4%가 불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해당 분석은 1차 상담을 분석한 것이라 최종적인 처리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요청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0 법적 진행 정도

<단위:건(%)>

유형 진행정도	신고	경찰	검찰	법원	합계
준강간	2(9.1)	6(27.3)	9(40.9)	5(22.7)	22(100)
준강제추행	1(25.0)	2(50.0)	-	1(25.0)	4(100)
합계	3(11.5)	8(30.8)	9(34.6)	6(23.1)	26(100)

2-9. 법적인 진행을 망설이는 이유는 처벌의 불확실성이 12건 30.8%에 해당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65건 중 법적 진행을 하지 않은 건이 39건이다. 그중 가해자 처벌이 불확실하여 고소를 고려하고 있는 건이 12건 30.8%에 해당하였다. 그 외 자책하는 마음이 8건 20.5% 그 뒤를 조직 내 처리를 원하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 경우 있는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법적진행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건(%)>

사과 요청	협박및무고	자책	처벌불확실	합의 등	조직내처리	합계
3	4	8	12	6	6	39
(7.7)	(10.3)	(20.5)	(30.8)	(15.4)	(15.4)	(100)

위의 <표 21>과 같이 피해자들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일 경우 가해자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특히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일 경우 법적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를 기억하면 준강간의 항거불능이 아니고 기억하지 못할 경우는 가해자의 논리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2020년 발족한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도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만난 사람이(가해자)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지만 1, 2심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음으로 준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동의에 대한 기억도 없고 또한 차에 태워질 때 이미 심실상실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CCTV까지 있음에도 블랙아웃상태를 동의로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논리대로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준강간의 판단에 있어서 블랙아웃은 큰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다행히 최근 심실상실을 넓게 인정하고 쉽게 블랙아웃을 동의로, 무죄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벌함으로써 술과 약물, 수면 등을 이용한 성폭력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III. 결론

- 2020년 초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공론화는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가해자 처벌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나타난 디지털 성폭력 중 카메라 이용촬영 유형을 세부분석하였다. 한편 형법상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형사 절차에서 그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인정받지 못해왔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피해유형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더하여 술·약물·수면을 동반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술이나 약물, 수면 중 일어난 피해에 대해 세부분석하였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성폭력 상담 중 카메라이용촬영 유형 상담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4%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처음으로 7%를 차지하며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건수는 전체 성폭력 상담 715건 중 총 50건이다. 카메라이용촬영 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포함한다.
-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중 친밀한 관계(데이트 상대, 배우자 포함)에 의한 피해가 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적 관계의 친밀함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82%로 카메라이용촬영 피해 또한 사회적 통념과 달리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피해(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 대인관계 회피 등) 중 불안을 호소하는 비중이 32%인데 비해, 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는 66%로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중 가해자가 유포 협박을 한 사례는 3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적지 않은 가해자들이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약점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다.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피해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한다면 준강간인 항거불능과 심신상실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상태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가해를 저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태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자 51.1%는 강간으로도, 준강간으로도 처벌이 어렵게 되는 법적인 공백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상황에서는 강제추행보다 강간에 이르는 비율이 높았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 직장 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준강간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7.6%로 전체 통계의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5.6%에 비해 세 배가 넘는다.

- 준강간의 경우 상담 전 조치에서 법적인 대응 > 주변인에 도움 요청 > 사과 요구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준강제추행은 주변인 도움 요청과 사과 요구가 30%에 육박하고, 조직공동체 대응이 그 다음 순, 그리고 법적 대응이 가장 낮은 17.7%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준강제추행일 경우는 주변인의 도움이나 사과 요구, 공동체 내 해결이나 개인적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피해 상담 중 법적 진행을 하지 않은 건이 60%인데, 그 이유로 30.8%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일 경우 법적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앞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벌함으로써 술과 약물, 수면 등을 이용한 성폭력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